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739 발의연월일: 2024. 9. 6.

발 의 자:최민희·김 윤·김태년

김 현 · 문금주 · 양부남

오세희 • 윤건영 • 윤준병

이광희 • 이연희 • 이재관

임미애 • 정진욱 • 조인철

주철현 · 채현일 의원

(17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원안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도록 함. 이중 2명의 위원이 상임위원이며 나머지 7명의 위원이 비상임위원에 해당함. 또한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상임위원을 포함한 4명의 위원은 위원장 제청으로 임명하고 나머지 4명의 위원은 국회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함.

그런데 현행법과 같은 위원 임명 구조는 결국 여야 불균형적인 구도를 만들 수밖에 없는 구도임. 이렇게 편파적인 구도 속에서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존재하며, 전체 위원수에 비해 상임위원의 수가 적어 책임소재도 불명확해

진다는 한계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원자력안전위원의 위원 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원안위원의 임명 및 위촉을 국회의 교섭단체별 의석수 비율에 따라 하도록 하고, 상임위원의 수를 총 5명으로 늘림으로써 위원의 임명 구조를 중립적으로 개편하고, 책임소재 역시 강화하고자 함(안 제4조 등).

또한 현행법상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사무처장을 상임위원인 위원이 겸임하도록 되어 있음. 사무처라 함은 위원회의 행정적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인데, 이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핵심적 업무인 원자력 안전관리 및 그에 대한 연구와는 동떨어져 있는 업무임. 상임위원이 사무처장을 겸임하게 되는 현행법상 상임위원이 안전관리 및 감시의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처 중심의업무 처리를 하게 되면서 그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짐.

이에 사무처장을 위원에서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원자력안전위원의 본래 임무에 충실하도록 하여 중립적이고 비판적인 안전 관리가 가능 케 하고자 함(안 제17조 등).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1명"을 "4명"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포함한 4명의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나머지 4명의 위원은"을 "포함한 8명의 위원은 교섭단체별 의석수 비율에 따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상임위원인 위원이 겸임"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사무처장은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구성 및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사무처장을 겸임하는 상임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무처장을 겸임하는 상임위원은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종료될 때(제7조에 따라 연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까지 사무처장을 겸임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 <u>1명</u> 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u>4명</u>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의 임명·위촉 등) ①	제5조(위원의 임명·위촉 등)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	2
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	
위원인 위원을 <u>포함한 4명의</u>	<u>포함한 8명의</u>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하여 대	위원은 교섭단체별 의석수 비
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나	율에 따라
머지 4명의 위원은 국회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사무처) ① (생 략)	제17조(사무처) ① (현행과 같음)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과	②
필요한 직원을 두되, 사무처장	
은 <u>상임위원인 위원이 겸임</u> 한	<u>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u>
다. <u><후단 신설></u>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u>이 경우 사무처장은 위원</u>
	을 겸임할 수 없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